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04
----------	-------

발의연월일 : 2025. 8. 6.

발 의 자 : 전용기 · 송옥주 · 장종태
민병덕 · 전진숙 · 손명수
황운하 · 임호선 · 박해철
윤종균 · 채현일 · 김 현
최민희 · 박용갑 · 박선원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영상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의 가공할 만한 전파 속도와 광범위한 확산 범위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력의 한계와 긴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고, 가해자의 행위 동기인 ‘수익 창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불법행위 자체를 ‘수익이 될 수 없는 행위’로 만듦으로써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1항 신설).
- 나.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 행위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안 제44조의11제1항 후단 신설).
- 다.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액 산정 시 고의성, 피해 규모,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함(안 제44조의11제2항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손해배상책임)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위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2.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법행위의 기간·횟수 등

5. 행위자의 재산상태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4조의11(손해배상책임) ① 누</u> <u>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u> <u>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u> <u>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u> <u>경우 그 행위자는 고의 또는</u> <u>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u> <u>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u> <u>1.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u> <u>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u> <u>람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u> <u>2.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u> <u>② 법원은 제1항의 손해액의 5</u> <u>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u> <u>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u> <u>이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u> <u>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u> <u>려를 인식한 정도</u> <u>2. 위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u> <u>해 규모</u> <u>3. 위법행위로 인하여 행위자</u> <u>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u>

	<u>4. 위법행위의 기간·횟수 등</u>
	<u>5. 행위자의 재산상태</u>